

##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002 - 4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02. 10. 17. 제안자 : 조선제의원 외 4인
---

### 개정이유

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설치로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의 위원장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.

### 주요골자

- 전문위원의 담당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보좌 기능을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보좌 기능으로 조정(안 제4조 제1항)

###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
-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

#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-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4조</b>(전문위원) ① <u>담당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.</u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<b>제4조</b>(전문위원) ① <u>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.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